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6. 22.  
제239회 임시회

##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6월 9일

○ 회부일자 : 2005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6. 14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도의회 입법기능 강화 및 현업부서 현장관리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 2,538명 ⇒ 2,545명 (증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6명 ⇒ 1,439명 (증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1명 ⇒ 65명 (증4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
  - 일반직 : 3명(5급1, 6급2)
  - 기능직 : 4명(10급 4)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담당 신설<sup>1)</sup>과 축산위생연구소의 가축사양관리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임.
- 충청북도의 총정원은 2,545명으로 현정원 2,538명 대비 7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로는 의회사무처 4명, 축산위생연구소 3명을 증원토록 하였음.

---

1) 담당명칭은 훈령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확정된 명칭은 아님

(표-1) 2005년도 증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04.12	'05.2	'05'6	총정원	증감
총정원	2,512	26	7	2,545	33
집행기관	1,410	26	3	1,439	29
의회사무처	61	-	4	65	4
소방공무원	997	-	-	997	-
교육공무원	44	-	-	44	-

- 의회사무처는 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명이 증원토록 하였고,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기능 10급 1명임.

(표-2) 의회사무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	65	1	7	8	13	13	23
전문위원실	23	-	5	2	5	6	5
총무담당관실	23	1	1	3	3	6	9
의사담당관실	15	-	1	2	3	1	8
입법정책담당	4	-	-	1	2	-	1

- 축산위생연구소는 현재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가축 사양관리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3명모두 기능 10급임.

(표-3) 축산위생연구소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연구 직		일 반 직				기능직
		연구관	연구사	4급	5급	6급	7급	
계	66	3	13	1	5	16	14	14
검 사 과	16		5	1	1	3	3	3
방 역 과	9		2		1	2	3	1
종축시험장	14	2	2		1	2	1	6
북부지소	12		2		1	4	4	1
남부지소	7		1		1	2	2	1
제천지소	8	1	1			3	1	2

-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문을 일부 보완한 것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렬별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538명”을 “2,545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436명”을 “1,439명”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61명”을 “65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의 규정)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정 원		2,545	947	65	1,240	293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 계	1,043	779	40	63	161
	2~3급	1		1		
	3 급	7	5		1	1
	4 급	55	36	7	4	8
	5 급	204	161	7	14	22
	6 급	349	264	13	18	54
	7 급	373	275	12	22	64
	8 급	53	37		4	12
일 반 별 · 정	소 계	4	3	1		
	5 급	2	1	1		
	6 급	1	1			
	7 급	1	1			
별정직	소 계	17	10	1	5	1
	1 급	1	1			
	5 급	2	2			
	6 급	9	3		5	1
	7 급	3	2	1		
	8 급	1	1			
연구직	소 계	138	1		109	28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7	1		91	25
지도직	소 계	24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18	
소방직	소 계	997	59		938	
	소방정	9	2		7	
	소방령	18	10		8	
	소방경	36	4		32	
	소방위	68	6		62	
	소방장	144	11		133	
	소방교	316	24		292	
	소방사	406	2		404	
교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2			32	
	조 교	11			11	
기능직	소 계	277	94	23	57	103
	6 급	8	5	1	1	1
	7 급	29	10	3	4	12
	8 급	58	18	1	6	33
	9 급	88	26	8	27	27
	10 급	94	35	10	19	30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538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6명</u></p> <p>2.~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61명</u></p>	<p>제2조 (정원의 총수) .....            ..... <u>2,545명</u> .....            .....</p> <p>1. .... : <u>1,439명</u></p> <p>2.~3. (현행과 같음)</p> <p>4. .... : <u>65명</u></p>
<p>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지와 같이 정한다.</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의 규정)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분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 비용소요 추계서

###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538명 ⇒ 2,545명(증7명)

###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91,870	
○ 인건비	238,503	
- 기본급	105,979	※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5급(1명) : 18호봉 기준 - 6급(2명) : 18호봉 기준 - 10급(4명) : 10호봉 기준
- 수 당	68,359	
- 정액급식비	10,920	
- 교통보조비	10,560	
- 명절휴가비	13,247	
- 가계지원비	22,079	
- 연가보상비	7,359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 물건비	11,28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11,28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42,087	
- 성과상여금	3,531	
- 연금부담금	26,845	
- 국민건강보험금	5,042	
- 연금지급금	6,669	